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24. 12. 5 선고 2023가단5815(본소), 2023가단6245(반소) 판결
[계약금 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 · 손해배상(기)]

전 문

원고(반소피고)A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광희

피고(반소원고)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포럼

담당변호사 조보현

변론 종결2024. 10. 17.

판결 선고2024. 12. 5.

주 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6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9.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본소: 주문과 같다.

반소: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는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에게 121,525,8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농장'이라는 상호로, 피고는 'D농장'이라는 상호로 각 양돈업을 하는 자이다.

나. 원고는 2023. 3. 8. E의 중개로 피고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자돈매매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자돈매매계약'이라 한다), 같은 날 피고에게 계약금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1. 갑과 을은 갑 농장(D농장 B)으로 하고, 을은 돼지를 받는 농장으로 한다(F농장 A).
2. 2023. 3. 8.부터 2024. 3. 8.까지로 한다.
3. 매월 25일에서 30일로 약 400두를 기준으로 한다.
4. 상한가 5,500원 하한가 4,500원 38배를 기준으로 정산한다.
5. 계약금 3,000만 원을 보증금으로 갑 농장(D농장 B)에 지불한다.
6. 법정병(콜레라, 구제역 등)으로 출하를 못할 시에는 서로 간에 협조한다.
7. 돼지 출하두수가 약정두수보다 미달일 경우 시중 시세로 배상한다. 예를 들면 400두 기준시 300두 출하시 100두분을 배상한다.
8. 돼지 출하 체중은 30kg로 기준하고, +-시 kg당 2,000원으로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자돈매매계약에 따라 피고로부터 다음과 같이 자돈을 공급받고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

2023. 3. 25.	400	75,420,000
2023. 4. 29.	400	89,100,000
2023. 5. 22.	200	42,380,000
2023. 6. 9.	212	42,968,000

2023. 3. 25.	400	75,420,000
2023. 6. 28.	219	49,650,000
2023. 7. 13.	199	43,336,000
2023. 7. 28.	200	45,284,800

라. 원고는 2023. 8. 24. 피고에게, 피고로부터 2023. 4. 인도받은 자돈의 상당수가 인도 당시부터 회장염을 앓고 있었고, 2023. 5.에는 자돈 200두만 공급받았으며, 2023. 7. 인도받은 자돈 중에는 다리가 부러져 있는 자돈도 있는 등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건강한 자돈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자돈매매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증명우편을 보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

1) 피고는 원고에게 질병이 있는 자돈을 납품하고 2023. 5.에는 약정 두수에 미달하는 200두만을 납품하는 등 이 사건 자돈매매계약에 따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장부분의 송달로서 이 사건 자돈매매계약을 해지한다. 피고는 계약 해지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보증금 3,000만 원을 반환하여야 하고, 이 사건 자돈매매계약 제3조, 제7조에 따라 2023. 5.에 납품하지 아니한 200두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3,800만 원(= 200두 × 상한가 5,500원과 하한가 4,500원의 평균치 5,000원 × 38배)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

1) 원고는 납품받은 자돈의 질병에 관하여 피고에게 통보하거나 이의하였던 바 없고, 실제 피고가 원고에게 공급한 자돈에 질병 등 문제가 없었다. 피고는 이 사건 자돈매매계약 체결 당시 원고에게 1달 간격이 아닌 2주 간격으로 자돈을 납품하는 것에 대하여 양해를 구하였고, 원고가 2023. 5.에 200두만 납품한 것을 문제삼자 원고의 요청에 따라 4회차 매매대금에서 400만 원을 감액하여 주었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자돈매매계약에 따른 채무를 불이행한 바 없다.

2) 오히려 원고가 2023. 8. 이후 이 사건 자돈매매계약에 따른 약정 두수의 매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는 손해배상으로 피고에게 2023. 8.부터 2024. 2.까지 원고가 약정대로 2,800두(=400두 × 7개월)를 매수하였다면 피고가 지급받았을 매매대금 516,860,800원과 피고가 위 기간동안 실제 자돈을 판매하고 지급받은 매매대금 365,335,000원의 차액 151,525,800원에서 보증금 3,0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121,525,800원(= 151,525,800원 - 30,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3.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상회복청구에 관한 판단

1) 갑 제3, 6 내지 9호증, 을 제42, 43호증의 각 기재, 증인 G, E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① 이 사건 자돈매매계약에 따라 실제 자돈 인도가 이루어질 때에는, 피고가 중개인 E에게 약 일주일 전에 미리 공급일을 지정하여 주고 E이 원고에게 그 일정을 전달하면, 이후 지정된 공급일에 운전기사가 피고 농장을 방문하여 자돈을 수거하고 원고 농장으로 운반한다.

② 원고는 2023. 3. 8.부터 2023. 7. 31. 사이에 피고 외에도 농업회사법인 H, I, J 영농조합법인 등이 운영하는 농장으로부터 돼지를 공급받았으나, 원고의 농장에는 2층짜리 축사가 두 동이 있고 원고는 서로 다른 농장에서 공급받은 자돈을 한 동에 수용하지는 아니하였다.

③ 원고의 아들 K은 2023. 4. 18. 원고 농장의 전담 수의사 G에게 원고 농장의 돼지가 붉은색 액체 설사를 보는 증상에 대하여 카카오톡으로 문의하였고, G은 회장염, 돈적리 증상으로 보인다고 답변하였다. G은 2023. 4. 26. 원고의 농장을 방문하여 왼쪽에 있는 축사의 2층에서 돼지를 검사하였는데, 육안상 제일 심한 한 방에서 약 20% 이상의 돼지가 검은 색 또는 출혈성 설사를 하는 증상이 있는 것을 확인하였고 폐사한 돼지도 보았다. G이 2023. 5. 11. 원고 농장을 방문하였을 때는 지난 방문보다 증상이 호전되었으나 여전히 급성 폐사 및 설사 증상이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G은 2023. 4. 25. 원고의 자돈 400마리에 대하여 타이로신 주사와 티아몰린 약을, 2023. 5. 11. 원고의 자돈 200마리에 대하여 타이로신 주사와 티아몰린 약을, 2023. 5. 22. 원고의 자돈 200마리에 대하여 타이로신 주사를 각 처방하였다.

④ E은 원고로부터 피고가 납품한 자돈 중 상당수가 혈변을 보는 등 문제가 있다는 말을 2023.

4.경과 2023. 5.경 각 한 번씩 들었다. E은 이후 피고 농장을 방문하였을 때 피고에게 자돈이 설사를 하니 자신이 직접 들어가서 확인해보고 싶다고 요청하였는데 피고가 방역을 이유로 거절하였고, 이에 E은 믿고 그냥 갈테니 성실한 자돈을 실어 달라고 말하기도 하였다. 피고는 2023. 5.경 원고에게 자돈 200두만 납품하였고, E이 피고에게 두수가 부족한 이유를 묻자 피고는 자돈이 덜 자라서 그렇다고 답하였던 적이 있다.

⑤ E은 2023. 8.초경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자돈매매계약 해지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피고에게 이를 전달하였다. 피고는 이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를 하지 않았고 이후 연락이 잘 되지 않았다.

⑥ 원고는 2023. 8. 7. 피고측에 전화하여, 피고로부터 4월에 공급받은 자돈 중 정상적이지 않고 체중이 큰 것이 15마리 있었고, 5월에는 공급량이 200두밖에 되지 않았으며, 자돈이 질병 문제로 설사를 하여 4월부터 계속 약을 사료에 섞어 주고 있고, 7월에는 뒷다리를 질질 끄는 자돈이 1마리 들어와 결국 도태시켰다고 하면서 계약을 지속하기 힘들겠다고 말하였다.

⑦ 돼지가 회장염에 걸린 경우 외에도 돈적리, 클로스트리듐 장염 등의 경우에도 혈변이 나오는 경우가 있고, 위출혈이 있으면 검은 변이 나오기도 한다. 타이로신과 티아몰린은 회장염, 돈적리 등 여러 질병의 치료에 사용되는 약품이다.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피고가 2023. 3.경부터 5.경까지 사이에 원고에게 공급한 자돈에는 혈변, 검은 변, 설사 등의 질병 증상을 보이는 것이 섞여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배치되는 을 제44호증의 기재는 증인 E의 증언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을 제6호증의 기재, 증인 L의 증언에 의하면, 의사 L이 2023. 8. 31. 피고의 농장을 방문하여 채취한 자돈의 혈액 15점, 분변 5점에 대한 혈청 및 항원검사 결과 위 샘플이 모두 회장염 음성으로 판정된 사실, L이 피고의 농장을 방문하였을 당시 설사를 하거나 위축되어 있는 자돈을 보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혈변, 검은 변, 설사 등 증상의 원인이 회장염 외의 다른 질병일 가능성도 있으므로 이 부분 인정사실만으로는 앞서 인정한 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2) 이 사건 자돈매매계약은 원고가 피고로부터 건강한 자돈을 공급받아 이를 육성하기 위한 것이므로, 질병 증상이 있는 자돈의 공급은 이 사건 자돈매매계약에 따라 요구되는 품질을 갖추지 못한 것이어서

피고가 이 사건 자돈매매계약에 따른 채무를 온전히 이행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원고가 피고의 불완전이행을 이유로 재차 이 사건 자돈매매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부분이 피고에게 2023. 9. 26.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자돈매매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어 종료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관계의 종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보증금 3,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는, 원고가 목적물을 지체 없이 검사하여 피고에게 그 하자를 통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는 상법 제69조 제1항에 따라 계약해제를 청구하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상인 간의 매매에서 매수인이 목적물을 수령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검사하여 하자 또는 수량의 부족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6개월 내에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지 아니하면 그로 인한 계약해제, 대금감액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상법 제69조 제1항은 민법상의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대한 특칙으로서(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8다3671 판결 등 참조),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는 이른바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청구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므로(대법원 2015. 6. 24. 선고 2013다522 판결), 원고가 피고의 불완전이행에 따른 해지권을 행사하는 이 사건에서는 상법 제69조 제1항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자돈매매계약에서 돼지 출하두수가 약정두수보다 미달일 경우 시중 시세로 배상하기로 정한 사실, 약정두수는 매월 400두인 사실, 피고가 2023. 5. 원고에게 공급한 자돈은 200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2023년 5월분 공급 미달두수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3,800만 원(= 200두 × 이 사건 자돈매매계약 제4조에 따른 기준가격 5,000원(상한가 5,500원, 하한가 4,500원의 평균) × 38배)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는, 원고가 2주 간격으로 자돈을 매매하는 것에 이의가 없었고, 원고의 요청에 따라 도의상 2023. 6. 9.자 공급대금에서 400만 원을 감액하여 주었으므로 원고가 더 이상 2023. 5. 약정두수 미달을 문제삼지 않기로 합의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피고로부터 자돈을 2주 간격으로 공급받는다 하더라도 이 사건 자돈매매계약에서 매월 공급두수를 400두로 정한 점에는 변함이 없고, 원고가 피고로부터 2023. 6. 9.자 공급대금에서 400만 원을 감액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기는 하나 그러한 사실이나 을 제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자돈매매계약 제7조에 따른 출하두수 미달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하였다거나 피고와 사이에 그에 대한 정산 합의를 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피고의 주장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6,800만 원(= 보증금 3,000만 원 + 손해배상금 3,8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가 이 사건 소장부분을 송달받은 다음날인 2023. 9.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자돈매매계약은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 사건 자돈매매계약에 따른 약정 두수 매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조민혜